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복수 개회 요구 시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개회〉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50호)

2025.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종배 · 김소희 · 이종욱 · 김용태 · 이만희 · 권영진
강승규 · 성일종 · 조배숙 · 박덕흠 · 송석준 의원(11인)

2. 제 안 일 : 2025. 2. 18.

3. 회 부 일 : 2025. 2. 19.

※ 의안번호 : 825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시회가 집회일이 동일한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위원회는 복수의 개회 요구에 관한 규정이 없음. 또한, 최근 위원회에서 복수의 교섭단체로부터 각기 다른 시각의 개회 요구가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특정 교섭단체가 의석수를 근거로 단독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상정·의결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수의 개회 요구에 대한 절차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

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 단서 신설 등).

1. 복수의 위원회 개최 요구 시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로 개최 결정
(안 제52조 단서)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법은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제52조¹⁾),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를 간사와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49조제2항2)).

현행법은 임시회의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둘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는 경우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고, 집회일이 같을 때에는 집회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제5조3), 위원회에서 개회일이 동일한 복수의 개회요구가 제출된 경우 위원회의 개회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참고] 같은 날 2건 이상의 위원회 개회요구 사례

	개회요구		개 회	
	개 회 요구일시	요구 안건	개회일시	비 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22.2.19. 00:01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	2022.2.19. 02:08	- 사회: 위원장 미소속 교섭 단체 간사 (§50⑤) - 안건: 2022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
	2022.2.19. 16:00	- 안건 미정		

※ 더불어민주당 2월 19일 0시 1분, 국민의힘 2월 19일 16시로 각각 개회요구서 제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월 19일 새벽 2시에 개회하였음⁴⁾.

- 2) 「국회법」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3) 「국회법」 제5조(임시회) ①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 4) [제21대국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2.19.) 회의록 중]

▶위원장 직무대행 맹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늦은 시각임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월 19일 자로 본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열다섯 분 위원님들의 개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금일 00시 01분에 열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국민의힘도 금일 16시에 회의를 개최하자는 개최 요구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시급한 민생 안건을 처리해야 할 의사일정 작성 책무를 거부·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결위 간사로서 국회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본인이 사회를 보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하 생략)…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에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의사운영의 민주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개회일이 동일한 복수의 개회요구 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할 경우 합의 도출의 곤란으로 인하여 처리가 시급한 안건의 심의·처리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반대하는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사진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개회일이 동일한 개회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가 남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본회의 개의 제한(안 제52조 단서)

개정안은 의장이 의원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4항 단서)5).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 ③ (생 략)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후단 신설>	④ ----- ----- ----- -----, 이 경우 의장은 의원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개의할 수 없다.
⑤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삭 제>

의사일정은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것으로서 회기 전체 또는 당일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라 할 수 있는데, ①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와 회의일시별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②당일의 본회의 개의시간,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되고 있음.

5) 동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미루어, 안 제76조제4항 후단은 현행법 제71조에 따른 위원회 준용을 고려하여 안 제52조단서 신설 규정(다만,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원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합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하여야 한다)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제76조는 기본적으로 본회의에 대한 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공표에 관한 조항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의사일정의 작성은 현행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의장의 권한으로서,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함. 의장은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는데, 이러한 협의는 국회의 관례에 따른 것이지 법률에 따른 의무가 아니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최종적으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게 됨⁶⁾.

현행법은 의장으로 하여금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76조제4항), 의장이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76조제5항).

개정안은 회의의 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포함한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도록 하여 의사진행의 예측가능성과 회의준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회의 진행의 예측가능성 제고라는 개정 취지와 긴급한 필요에 대비한 현행 규정의 존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4

6) 국회사무처, 국회법 해설, 2024.7. P.369